

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

일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8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9. 25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가. 2025 정부합동평가 자치법규 개선과제(소비자 권익제한 개선사항)
나.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납부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하거나 군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, 환불 처리기준을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권리율 보호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이용료의 반환(안 제15조)

- 이용신청 취소유형 및 환불 처리기준을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 및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별표2. 10호 제4항에서 정한 환불·위약금 기준 반영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- 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- 라. 기타 :

- 1) 입법예고(2025. 8. 7. ~ 8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5-1184호, 올림픽체육과-7641(2025. 8. 7.)호
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2165(2025. 8. 5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2165(2025. 8. 5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29354(2025. 8. 6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3979(2025. 9. 5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제1항과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
[별표 2] 체육시설업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(사용료를 포함한다) 반환
및 위약금 배상을 할 수 있다.

1.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
2. 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이용료의 반환) ①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한다.</p> <p>1.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: 전액 반환</p> <p>2. 이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: 이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</p> <p>3.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: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</p> <p>②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환급 및 배상한다.</p> <p>1.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: 이용료 전액 환급</p> <p>2. 이용일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취소: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</p> <p>3.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: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</p>	<p>제15조(이용료의 반환)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[별표 2] 체육시설업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(사용료를 포함한다)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이용(사용)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</p> <p>2. 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</p> <p><삭제></p>

퍼센트 배상

4. 이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

가 없는 경우: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30퍼센트 배상

③ (생략)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다만,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-----

-----.

-----.

관계법령 발췌

□ 소비자기본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5093호)

제8조(소비자분쟁해결기준)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소비자단체·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별표 2. 10. 학원·교습·레저 서비스 관련

< 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(3개 업종) >

④체육시설업, ⑤레저용역업, ⑥할인회원권업 (1-2)		
분쟁 유형	해결 기준	비고
1)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	○ 계약해제	*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
2) 시설고장,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	○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	* 회원제 골프장업, 스키장업, 요트장업,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
3) 신체상 피해 발생	○ 배상액 배상	
4)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- 이용개시일 이전 - 이용개시일 이후 •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•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	○ 반환금액 환급 • 반환금액 = 이용료 + 위약금 ○ 반환금액 환급 • 반환금액=[이용료-(이용료× 이미 경과한기간(일수) 계약상 이용기간(일수))]+ 위약금 • 반환금액=[이용료-(이용료× 이미 이용한 횟수) 계약상 이용횟수)]+위약금	*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,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*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, 계약금·입회금·가입비·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. 다만,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
5)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- 이용개시일 이전 - 이용개시일 이후 •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•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	○ 반환금액 환급 • 반환금액=이용료-위약금 ○ 반환금액 환급 • 반환금액=[이용료-(이용료× 이미 경과한기간(일수))] - 위약금 • 반환금액=[이용료-(이용료× 이미 이용한 횟수) 계약상 이용횟수)] - 위약금	* 위약금은 이용료의 1/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
연락처	(033) 330 - 2018